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고용노동부장관의 공인노무사회 출입·조사 등에
대한 사전 통지 >

■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02203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2024년 7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회 사무소에 출입·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7일 전에 미리 조사 일시 등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노무사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인노무사회에 일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 7일 전까지 알리도록 하되(안 제25조제8항 본문),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8항 단서).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 ⑥ (생략)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u><신 설></u>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u>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회에 이를 행하기 7</u>

⑧ (생 략)	<u>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	--

2. 검토의견

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설치된 법인으로,¹⁾ 고용노동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음.²⁾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노무사회의 사무소에 출입하게 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공인노무사회를 감독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수집하는 행위로 일종의 행정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³⁾

1)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①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인노무사회를 둔다.

④ 공인노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2)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공인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3)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행정조사 이후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행정조사로 인해 공인노무사회의 원활한 운영이 저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 현행법상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조사에 관하여는 사전통지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⁴⁾을 고려하여 공인노무사회의 감독에 필요한 행정조사에 대하여도 사전통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⁵⁾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⁶⁾ 해당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행정조사의 절차에 관하여 「행정조사기본법」과 달리 규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에게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일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①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조사에 관하여는 사전통지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⁷⁾을 감안하여 법체계 정합성에 맞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0

7)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에게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일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